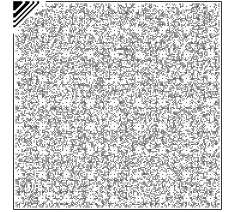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 나.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2.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불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약무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대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영호 보건사무관 대결 2020. 11. 12. 황신자 보험약제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3724 (2020. 11. 1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6 팩스번호 044-202-3935 / emile05@korea.kr / 대국민 공개